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식백지신탁 관련 매수자 신고, 행정쟁송 시
직무관여 금지 및 심사 내용 공개〉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14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매수자를 정하여 주식 매각시 매수자 신원 신고	3
2. 직무관련성 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쟁송 중 직무관여금지	7
3. 직무관련성 심사 결정에 불복시 심사 내용 공개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용혜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29.
3. 회부연월일 : 2025.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고위공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해당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직무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해당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음.

또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후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지인에게 보유 주식을 임시로 매각하는 소위 ‘주식 파킹’을 의심받는 고위공직 후보자 사례도 발생함.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훼손하는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고위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매수자를 정하여 매각한 때에는 매수자의 신원을 신고하도록 하고(안 제14조의4제5항 신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 관여

를 금지하는 사유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하며(안 제14조의11 제1항제5호 신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5제14항 신설).

Ⅱ. 검토의견

1. 매수자를 정하여 주식 매각시 매수자 신원 신고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훼손하는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매수자를 정하여 주식을 매각한 때에는 해당 매수자의 신원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 ④ (생략) <u><신설></u> ⑤·⑥ (생략)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를 정하여 매각한 때에는 해당 매수자의 신원을 같은 항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 매각 시 매수자 신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을 매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상 공개대상자등(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¹⁾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이 재산심사나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지인이나 가족 등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직자윤리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개정안은 매수인을 정하여 매각할 경우 해당 매수인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공정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신고 사항을 매수인의 신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신고 대상을 ‘매수인의 성명과 관계’ 등으로 구체화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주식 매각·백지신탁의무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주식매수인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라는 제도의 목적과 사생활 보호 필요성의 법익 간 균형을 위해 주식 매각시 신고하여야 하는 매수인에 관한 정보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개대상

자등이 주식 매각시 매수인의 성명과 매수인과의 관계를 신고하도록 조문을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법원행정처는 매수자 신원 신고로 인한 주식 매매 거래 위축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각 후 재매입 행위 방지를 위한 제재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법상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계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매수자 신원이 공개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직무관련성 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쟁송 중 직무관련금지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통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행정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 받은 날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대해 관여할 수 없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제14조의5제7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

② ~ ④ (생략)	<u>심사위원회로부터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행정쟁송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u>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는 공개대상자 등(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임.²⁾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

현행법 제14조의11³⁾은 공개대상자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2.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3.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4.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가. 제1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매각한 날

나.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날

다.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이하 “이해충돌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해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에 관한 사항은 크게 1)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제14조의11제1항제1호), 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제14조의11제1항제2호), 3)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제14조의11제1항제3호), 4)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매각이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지연한 경우)(제14조의11제1항제4호) 등 4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그 시기와 종기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라.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② 공개대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자등은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경우”에 있어서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직무 관여가 금지되는 시기와 종기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직무 관여가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법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직무 관여가 금지되는 기간의 종기를 모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⁴⁾ 현행법에 따라서도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행정쟁송 제기 여부에 상관 없이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는

4)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이해충돌 직무 관여가 금지되는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①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제14조의11제1항제2호), ②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제14조의11제1항제3호), ③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제14조의11제1항제4호다목), ④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제14조의11제1항제4호라목)로 규정하고 있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 보임.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4조의11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동 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때, 동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통보가 있지 않는 한 쟁송기간 중에도 동 법률 규정에 따라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 직무 관여가 계속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봄.

그러나, 현행법 규정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행정상 절차에 한정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동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게 될 수 있는바, 규제의 공백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다툼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음.

또한,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일정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당사자에 대해 불이익한 금지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볼 때,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통보를 받은 공직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행정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동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 관여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만을 특정하여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도 「행정기본법」 제36조5)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동법 제37조6)에 따른 재심사와 같은

5)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불복 절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⁷⁾ 현행법 제14조의12⁸⁾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주식

6)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룰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취소·철회·변경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행정청의 제18조에 따른 취소와 제19조에 따른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의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3.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4.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5.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개별 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이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음.

8)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직권재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행정소송과 같은 행정쟁송 제도 외의 불복 절차나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포섭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봄.⁹⁾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에 대한 행정쟁송 중 직무 관여금지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상 직무관여금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개정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개정안은 의무이행기간 내 심사를 청구하여 받은 결정에 불복 하는 경우에만 직무관여금지를 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직위변경 후 또는 의무이행기간을 도과하여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등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참고로, 동일한 취지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되어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¹⁰⁾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개정안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한하여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그 외의 불복 절차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재심사의 경우에는 직무 관여 금지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10)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32호),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82호)

3. 직무관련성 심사 결정에 불복시 심사 내용 공개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통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심사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1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 ⑬ (생 략) <u><신 설></u>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 ⑬ (현행과 같음) <u>⑭ 제7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 우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의 요지 등 해당 심사의 내 용을 공개하여야 한다.</u>
<u>⑭</u> (생 략)	<u>⑮</u> (현행 제14항과 같음)

공개대상자등(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
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전보 등

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날¹¹⁾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되며, 동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음.

현재 법 제20조의2¹²⁾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통해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및 결과에 관한 통계 자료가 공개되고 있으나,¹³⁾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나 심사 결과의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11)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함.

12)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에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해당연도에 이루어진 심사청구의 건수,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건수, 직무관련성 불인정 건수, 각하 및 철회 건수 등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결정의 요지 등 해당 심사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마련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심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등록재산의 공개 제도, 주식거래 신고내용의 비공개 원칙 등 현행 법률 규정과의 관계에서 상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 심사 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봄.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법 제10조에 따른 재산 공개대상자 외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쟁송 제기로 해당 심사내용을 공개할 경우 이들의 재산에 관한 정보가 간접적으로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쟁송 제기 시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 공개의 공익적 기대효과와 등록재산의 공

개 제도 등 현행 법률 규정과의 체계정합성,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함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개정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에 불복시 심사 내용 공개
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현행법은 재산 내역과 관련하여 재산 공개대상자의 최초·정기
재산 현황만을 공개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엄격
히 제한하고 있으며,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내용과 관련해서는 심
사 관련 정보의 목적외 이용 금지, 비밀엄수 규정 등에 따라 공
개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에 대해 행정쟁송이 제기되면
심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불복 여부에 따라 공
개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비공개자의 재산정보가 간접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이나 행정쟁송 제기를 공개 사유로 삼을 경우 재판청구권 행사
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아울러 심사 내용을 공개한다고만 규
정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 시기,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법원행정처는 고위공직자의 심사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공직자 또는 기관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어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참고로, 유사한 취지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되어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개정안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임.

《 제22대국회 유사 취지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의원	의안번호	주요내용
민형배의원	2202906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제외하고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
박지원의원	2210010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
이인영의원	2206082	주식의 직무관련성 결정을 내린 주식백지 신탁위원회는 해당 심사의 청구내용과 그 심사 결과를 공개
최민희의원	2210159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가 주식백지 신탁위원회 심사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개

문 의 처
02)6788-5342